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06월 18일 김포시장  
 나. 회부일자 : 2003년 07월 01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07월 01일  
 라. 의결일자 : 2003년 07월 16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결산검사 의견서
-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이종경)

-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임종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용훈 전직 공무원과 신태석 회계사, 안상인 세무사를 위원으로 하여 모두 4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계시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공기업 포함)를 합한 재정 규모는 전년도(2001년)보다 8.1% 증가하였으며 세입규모도 5.1%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세출도 10.5%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5%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예산 및 재정의 운영에 다소 노력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불납결손액이 74.4%, 미수납액이 8.6% 각각 증가되었으므로 체납액 정리와 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9.7% 증액되었고 지출액도 1.5% 증가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6%로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33.9%로 감소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과다계상 및 집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액이 19.7% 감소하였고 정수결정액·수납액·미 수납액도 각각 25.3%·24.3%·56.8% 감소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성립 후 증·감액을 비롯하여 전년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액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 끝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9개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에 대비하여 지출액이 저조하거나 지출이 아예 없는 기금도 있으며 지출이 저조한 상태로 전년도 누계액과 당해연도 수납액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출빈도가 적은 기금의 통합 등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기타 세목기준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었거나 지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뒤늦게 과목을 변경 전용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불용예산 내역을 불임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결산서의 회계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영상 동일한 유형의 부실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예산심사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액 불용예산 내역**

구분	과 목	금 액(천원)	관 리 부 서	비고
일반회계	포 상 금	1,000	기획담당관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2,000	행정과	
	일 반 보 상 금	9,000	"	
	재 료 비	100	복지과	
	의료 및 구료비	300	"	
	기 타 보 상 금	1,228	"	
	행사실비보상금	6,000	농정과	
	일 반 운 영 비	5,900	"	
	감 리 비	50,260	건설과	
	재 료 비	600	"	
	사회보장적수혜금	1,900	양촌면	
	행사실비보상금	1,625	통진면	
	일 반 운 영 비	1,800	"	
	일시사역인부임	2,202	대곶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900	"	
	사회보장적수혜금	1,900	월곶면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효지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대의견(질의 · 답변요지 · 토론효지 · 소수의견의 요지 · 기타 필요한 사항 요약)

-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긴급한 사업이라 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실정으로 이는 관련 담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었음.
- 특히 예산편성 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 예측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계속비로 5000여 만원을 이월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불용시키는 자세는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의 사장으로밖에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예산을 편성 지출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판단하여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일정 비율의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일단 시행 후에는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을 볼 수 있어 국도비 내시를 받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기능과 서류심사라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 따라서 의원님들의 좀더 빠른 이해와 심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금의 예산과목 편제순이 아닌 부서별 편제와 목별 집행내역을 첨부한 자료가 있을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해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림.